

대전지방법원 2022. 8. 30 선고 2022가단11432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피 고 B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8. 30.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22. 1. 15. 체결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하고,
나. 피고는 C에게 대전지방법원 등기와 2022. 3. 11. 접수 제2094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판사 이수환

[별지]

목 록

(1동의 건물의 표시)

대전 서구 D, E, F에 있는 G동

도로명 주소 대전 서구 H

철근콘크리트 및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지붕 3층 아파트

1층 274.68㎡, 2층 274.68㎡, 3층 270㎡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 지하실 108㎡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1층 1호 철근콘크리트 및 시멘트 벽돌조 54㎡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대전 중구 D 대 317.4㎡

2. 대전 중구 E 대 362.1㎡

3. 대전 중구 F 대 362.2㎡

(대지권의 표시)

1, 2, 3 소유권대지권 1041.7분의 32.55 끝.

청 구 원 인

1.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부실채권을 매입, 회수하는 법인체로서 소외 C에 대한 양수금채무에 대하여 각각의 양수도계약을 거쳐 최종양수권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피고는 소외 J의 자녀이자 소외 C의 동생으로서 소외 C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합니다.)의 소유권을 이전 받은 약의 수익자입니다.

2. 대여금채무

소외 C는 소외 K 주식회사로부터 대여금을 받은 후 원금 및 이자의 변제를 이행하지 않아 기한의이익이 상실되었습니다.

3. 채권양도·양수계약

위 채권은 2007.11.27. 채권매매계약에 의해 소외 K 주식회사에서 소외 L 주식회사로 양수되었고, 그후 2008.12.24. 채권매매계약에 의해 소외 유한회사 M로, 2019.08.30. 자산양수도계약에 의해 원고에게로 최종 양수되었습니다.

4. 채권양도통지

소외 K 주식회사는 2008.01.08. 소외 L 주식회사는 2009.01.09. 소외 유한회사 M는 2020.01.20. 채권양도통지서를 각 발송하였습니다.

5. 그런데, 피고는 소외 C의 채무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으면서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2.01.15.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22.03.11.자로 피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6. 피고와 소외 C의 사해행위

(가) 원고는 금번 소외 C의 재산을 추적 조사하던 중, 이 사건 부동산을 발견하였고 소외 C 채무초과 상태에서 동생인 피고와 통보하여 소외 J의 사망을 원인으로 하여 2022.03.11.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위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었습니다.

(나) 따라서 이는 소외 C가 위 채무를 면하고자 원고 등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동생인 피고에게 상속지분을 포기한 점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부동산상속으로 인하여 원고 등 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할 것이며, 한편 수익자인 피고도 이 사건 부동산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당시 소외 C의 재정상태가 불량하여 가까운 장래에 위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원고 등 채권자를 해하게 되리라는 사정을 알았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소외 C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 피보전 채권의 존재 및 성립

소외 C는 2008.03.13. 대여금 소송에 의하여 채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행위가 성립되었

 이 사건 사해행위는 2022.03.11.자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라) 채무초과에 대하여

이 사건 사해행위 당시 소외 C의 소극재산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소2423528대여금 사건 기준으로 30,071,502원이 존재하는 반면 적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이 유일한 부동산으로 이를 피고에게 상속지분을 넘김으로 채무초과상태였다고 할 것입니다.

7. 사해행위취소 및 원물반환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 전부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사해행위의 대상이 된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에 원고는 사해행위인 피고와 소외 C와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취소하고, 사해행위 결과에 대한 원상회복으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외 C의 상속지분에 한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합니다.

